

제 1314 호  
1986.9.15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인민부  
편집인 : 공민이  
전화 : 731-6111-3  
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 
전화 : 735-3337

선 것 공 보 관	김지 (공관민)	공보국장
접수인 1386	시 관 호	윤도계장
처리과	인사	

# 시 보

## 차 례

- ◎ 공 고
  - 제 508 호 : 도시계획인공고 ..... 2
  - 제 515 호 :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취인등록 ..... 2
  - 제 518 호 : 비료생산업허가사항변경허가 ..... 5
  - 제 519 호 : 서울특별시세입징수관공인신조등록 ..... 5
- ◎ 사 령

공									
발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# 서울특별시

**공 고**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508 호

도시계획안공고

1. 도시계획법 제 16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14 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안을 다음과 같

나. 도시계획안

이 공고하고 아래장소에서 14일간 일반인에게 보인다.

2. 도시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종로구청에 제출하기 바람

가. 공람기간: '86.9.15-86.9.30 ( 14 일간 )

1986.9.15

서울특별시장

구 분	도시계획안	위 치	규 모	공람장소	비 고
신 설	수 도	종로구 혜화동 3 - 1 일대	186.6 ㎡	종로구청	
변 경	학 교	종로구 혜화동 1 - 일대	기정: 37,584 ㎡ 변경후: 37,420.5 ㎡		집) 163.5 ㎡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515 호

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공고

서울특별시 조례 제 2093 (86.8.16) 호에의거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을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, 직인 규칙 제

7 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조 등록하고 동 규칙 제 11 조에 의거하여 공고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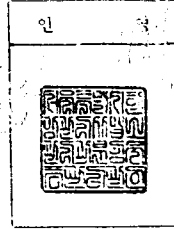
1986.9.15

서울특별시장

1. 직인등록조서: 별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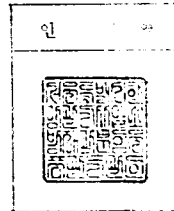
직 인 등 록 조 서

회 제 명 일반 회 계  
 관 서 명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  
 직 명 서울특별시한강관리사업소관리과분임  
 물품관리관인  
 사용개시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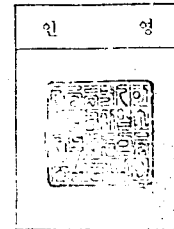
직 인 등 록 조 서

회 제 명 일반 회 계  
 관 서 명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  
 직 명 서울특별시한강관리사업소관리과분임  
 물품관리관인 (2)  
 사용개시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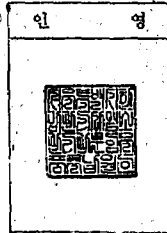
직 인 등 록 조 서

회 제 명 일반 회 계  
 관 서 명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  
 직 명 서울특별시한강관리사업소시설과분임  
 물품관리관인  
 사용개시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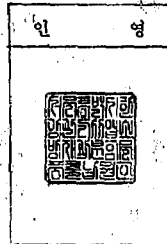
직 인 등 록 조 서

회 계 명 일반 회 계  
 관 서 명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  
 직 명 서울특별시한강관리사업소관리과분임  
 물품출납원인 (1)  
 사용개시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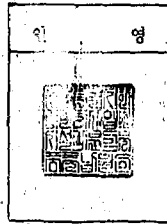
직 인 등 록 조 서



회 계 명 일반 회 계  
 관 서 명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  
 직 명 서울특별시한강관리사업소방재과  
 분임물품출납원인 (2)  
 사용개시일



직 인 등 록 조 서

회 계 명 일반 회 계  
 관 서 명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  
 직 명 서울특별시한강관리사업소시설과  
 분임물품출납원인 (3)  
 사용개시일



<p>③ 서울특별시공고제 518 호</p> <p>비료생산업허가사항변경허가공고</p> <p>비료관리법 제 11 조 제 4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4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비료생산업제의 상호 및 주소지 변경허가 하였고 동법시행령 제 7 조 제 1 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</p> <p>1986 년 9 월 15 일 서울특별시장</p> <p>1. 허가번호: 제 1-1 호 2. 성 명: 홍 연 석 3. 주 소: 서울강남구방배동 734 한미빌라 202 호 4. 상호 및 주소지 변경허가 내역</p>		<p>④ 서울특별시공고제 519 호</p> <p>서울특별시세입징수관공인신조등록공고</p> <p>서울특별시 세입징수관 (한강관리사업 수입관계) 공인을 아래와 같이 신조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 7 조에 의거 등록하고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 6 조에 의거 공인한다.</p> <p>1986. 9. 15. 서울특별시장</p> <p>1. 공인명: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 세입징수관인 신조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 수입금출납원인 신조 2. 사용개시일자: '86.9.11. 3. 공인의 인명: 별첨.</p>		
구분	변경 전	변경 후	인	 
상호	서울미원 주식회사	주식회사미원		
주소지	서울 도봉구 방학동 7	서울 도봉구 방학동 720	공인	<p>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 징수관인</p> <p>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 수입금출납원</p>
5. 허가년월일: 1986년 9월 15일			영	

**사 령**

◎ 1986년 9월 11일자				명제 402호	
성명	발령사항	현부서	직	급	
이영남 권오용	행정서기에 한함. 지방행정서기에 임함.	관악구	지방행정서기 행정서기		
◎ 1986년 9월 12일자				명제 403호	
성명	발령사항	현부서	직	급	
이병규	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간 직무 대리를 명함.	회계과장	서기	관	
◎ 1986년 9월 12일자				명제 404호	
성명	발령사항	현부서	직	급	
김병석	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. ( '86.9.12 ~ '86.12.11 까지 내무국 대기근무	종합운동장 관리사업소장	지방서기	관	
◎ 1986년 9월 15일자				명제 406호	
성명	발령부서	직위	직	급	비고
김천억	경찰국 면허과	선산치리사(1호봉)	지방별정직	8급상당	산규
◎ 1986년 9월 13일자				명제 407호	
성명	발령사항	현부서	직	급	
홍명성	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.	경찰국 면허과	지방별정직	7급상당	
◎ 1986년 9월 15일자				명제 409호	
성명	발령사항	현부서	직위	직급	
김용기	지방별정직 6급상당에 임함. 주택개발과 근무 (판독사, 7호봉)	주택개발과	판독사	지방별정직 7급상당	